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의무 신설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3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의무 신설	3
※ 참고자료	13
1. 악취배출시설 현황(2023)	13
2.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2023)	14
3.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16
4.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사례	17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9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의무 신설

개정안은 신고대상시설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악취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4(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운영) ① <u>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악취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u> 2. <u>악취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u> 3. <u>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악취가 새 나가는 악</u>

현행	개정안
	<u>취배출시설이나 악취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u> 4. <u>악취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u> 5. <u>그 밖에 악취배출시설이나 악취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u>

현행법¹⁾에서는 ① 악취관리지역 내에 설치·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

과 ②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고대상시설’²⁾로 규정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³⁾을 수립하여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악취배출시설의 분류]

구분	신고대상시설		그밖의 악취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내(제8조)	악취관리지역 외(제8조의2)	
사업장 수 (‘23년)	○ 6,174개소 ※ 악취관리지역 : 55개	○ 89개소	○ 미신고 169,642개소
신고 요건	악취관리지역 내 모든 악취배출시설 →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신고 의무	①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②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	—
의무	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② 악취방지계획 수립·제출 ③ 악취방시설 설치, 탈취제 살포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
위반 시 제재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제10조)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제12조)		○ 개선권고 (제14조)

※자료: 환경부

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요 업종별 신고대상시설 현황(‘23년)]

구분	계	금속가공	플라스틱	화학제품	인쇄	폐기물	폐수처리	축산	기타
합계	6,263	3,213	423	415	294	192	191	152	1,383
관리지역 내	6,174	3,212	423	413	293	172	183	130	1,348
관리지역 외	89	1	—	2	1	20	8	22	35

3) (참고자료 3) 시행규칙 제11조(악취방지계획) [별표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그런데 축산업에서의 분뇨처리, 섬유 가공업에서의 표백·염색 등과 같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악취⁴⁾의 경우 지속적인 악취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이후 적절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악취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악취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악취방지시설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악취를 저감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⁵⁾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4) [주요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배출원 (자료: 환경부)]

업종	주요 악취배출원
축산	분뇨수거, 분뇨처리과정, 퇴·액비화시설, 방치된 분뇨 등
도축 가공	계류·도축과정, 부산물 처리과정, 폐수처리과정 등
식료품 제조	원료저장시설, 증자·발효·건조 공정, 폐수처리과정 등
섬유 염색 및 가공	가공·세척·표백·염색·건조 공정 등
금속제련, 표면처리	도장·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카리처리, 건조 공정 등

5)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사업자와 「물환경보전법」 6)에 따른 수질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법률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⁷⁾을 검토할 필요⁸⁾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의 적절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9) 및 「물환경보전법」 10)

6)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7) 인천시 의견

8) 환경부에서는 제재 규정 신설 의견에 동의하며, 현행법 제28제1항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제3호에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악취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인한 처벌의 상한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에서는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경우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벌칙 및 조업정지 명령 등의 제재 조치 근
거를 마련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
지 아니하거나 악취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제1호)와 악취방지시설을 거치
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시설, 하·폐수처리장 등 면(面)오염원¹¹⁾의 경우에는 일
정한 배출구 없이 악취를 배출하므로 탈취제, 부분 밀폐 등의 조치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식품제조업¹²⁾ 등의 경우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9)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0)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축산시설) 가축 사육시설, 퇴비사 등 부분 밀폐(비가림 시설 등)로 운영 중

(면오염원 사업장) 하·폐수처리장 및 집수조, 매립장, 야적장 및 보관시설 등의 경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환경부)

12) (도축시설) 계류시설 → 부산물 처리공정(방지시설 설치) → 폐수처리

공정 단계에 제한적으로 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음¹³⁾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¹⁴⁾과 같이 예외적으로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준수 의무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악취방지 조치 유형별 현황(2013)]

악취방지요지	구분	시설수(개소)	비율(%)
악취방지사설 설치	흡수	4,374	36
	흡착	3,583	29
	산화(RTO, CTO)	676	6
	미생물	22	0.2
기타 악취방지요지	탈취제	833	7
	기타(밀폐, 미확인)	2,725	22
총계		12,213	100

(식품제조) 원료 반입 → 배합 → 자숙(증자) 공정(방지사설 설치) → 폐수처리

(아스콘제조) 원료 반입·저장 → 분쇄·선별 → 가열(방지사설 설치) → 혼합 → 출하

13) (참고자료 4) 악취방지사설 설치·운영 사례

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셋째,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15)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속하는 악취방지시설의 경우 중복 규제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로 규제 중인 악취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할 필요¹⁶⁾가 있어 보임.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17) 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자는 오염

1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

16) 인천 서구청의 경우, 악취 신고사업장(1,316개소) 중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1,259개소이고, 악취방지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은 1,160개소로 전체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92.1%임.

17)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물질 측정기기 부착, 배출부과금 납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업정지처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악취방지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음.

[악취방지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비교]

악취방지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가. 연소에 의한 시설	1.~7. 집진시설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음파)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바.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제재 수준 비교]

위반행위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위반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배출시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 또는 방해	3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이행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	—
조치명령 미이행(신고 외 사업장 대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기기 조치명령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변경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악취배출시설 현황(2023)

계	악취배출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외
	169,642	6,174	89
1. 축산시설	90,518	130	22
2.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1,049	10	2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672	7	1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118	5	1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282	20	4
6. 식품 제조시설	1,610	64	—
7. 알코올 음료 제조시설(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94	2	—
8.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14	—	—
9. 담배 제조시설	7	1	—
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21	—	—
11.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시설	535	3	—
12.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849	139	2
1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53	3	1
14. 가죽 제조시설	81	18	—
15. 신발 제조시설	70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14	115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300	26	1
18. 인쇄 및 인쇄관련 시설	988	293	1
19.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360	51	1
20.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360	93	—
2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68	124	—

계	악취 배출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외
	169,642	6,174	89
22. 무기안료·합성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135	50	—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371	10	17
2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3,709	423	—
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90	58	—
26.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시설	51	8	—
27. 화학제품 제조시설	1,292	413	2
28. 화학섬유 제조시설	117	17	—
29.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630	84	1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1,170	42	2
31. 1차 철강 제조시설	426	26	1
32.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965	71	—
33.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81	61	—
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9,547	3,212	1
3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361	30	1
36. 산업용 세탁시설	286	21	—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48	3	—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44,475	183	8
3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	3,826	172	20
40. 그 밖의 시설	1,899	186	—

자료: 환경부

2.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2023년도)

배출시설명	항목	사업장수	민원건수	신고대상시설			신고대상 외 시설		
				사업장수	초과 사업장수	기준 초과건수	사업장수	초과 사업장수	기준 초과건수
	계	169,642	25,302	6,263	148	180	163,379	334	444
1. 축산시설		90,518	15,701	152	10	16	90,366	114	141
2.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1,049	727	12	3	3	1,037	10	17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282	301	24	3	3	258	11	16
6. 식품 제조시설		1,610	529	64	4	5	1,546	13	18
12.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849	324	141	4	6	708	20	33
2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3,709	364	423	5	5	3,286	15	18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371	978	27	9	13	344	28	44
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9,547	745	3,213	29	35	6,334	18	28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44,475	933	191	15	15	44,284	17	20
3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		3,826	1,617	192	14	17	3,634	32	37
그 밖의 시설(30개 시설)		13,406	3,083	1,824	52	62	11,582	56	72

자료: 환경부

3.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 가. 연소에 의한 시설
-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바.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4.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 사례(자료: 환경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례(축산시설)



□ 주공정에서 제한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하는 사례(아스콘처리시설)

